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연구재단법」 개정(‘21.4.20)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법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제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0조, 별표)

-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함(과태료 감면사유 및 감면 제외 사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u>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u>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제19조제 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 신 설 ></u>	<u>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u>
<u>< 신 설 ></u>	<u>[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u> <u>1. 일반기준</u> <u>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u> <u>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u>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u>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
 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연구재단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 23 조 제1항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연 락 처	(044) 202-4521